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 중 철 의원 (찬성자 17명)

나. 의안번호 : 제 1069 호

다. 발의일자 : 2016. 3. 11

라. 회부일자 : 2016. 3. 11

2. 제안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이 과거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 어린이안전관람 등 생활에 필요한 폭넓은 안전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현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방재교육”기능을 생활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개정함.(안 제2조)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월 1일·2일”로 규정 되어진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다. 2007. 10. 1.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조제5항)
- 라.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순오기 “이용시간·회수”를 “이용시간·횟수”로 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5조¹⁾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을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세분화하고, 체험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휴관일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 현재 소방재난본부 산하 ‘광나루안전체험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이 가상재난의 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올바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의식 및 재난대처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광나루안전체험관’은 광진구 능동로에 2003.3.6 건립되어 현재 상근자 26명, 연간운영비 6억원(2015년도 기준)이 소요되고 일일평균 499명의 체험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 ‘보라매안전체험관’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2010.5.25 건립되어 상근자 30명, 연간운영비는 4억7천8백만원(2015년도 기준)이 소요되고 일일평균 475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음.([표 1] 참조)

1)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표 1] 시민안전체험관 주요 현황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개관일	2003. 3. 6.	2010. 5. 25.
위 치	광진구 능동로 238 (어린이대공원 옆)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내)
시설규모	3/1층, 연면적 5,444.5㎡, 대지 5,041㎡	3/1층, 연면적 8,020㎡, 대지 4,753㎡
시설건립 총 비용	205억 4,900만원	414억 5,200만원
연간운영비 (2015년)	6억원	4억 7,800만원
이용대상	어린이 층 (6세이상)	청소년 이상 (14세 이상)
상 시 근무자수	[총 26명] ▷ 운영분야 : 14명(소방 7, 기능 1, 용역 6) ▷ 청사관리 : 8명(청소 5, 시설관리 3) ▷ 사회복무 : 4명(안전관리)	[총 30명] ▷ 운영분야 : 16명(소방 16) ▷ 청사관리 : 10명(청소 6, 시설관리 3, 전산용역 1) ▷ 사회복무 : 4명(안전관리)
체험코스별 소요시간	▷ 재난체험 : 2시간 ▷ 전문체험 : 1~3시간 (※ 응급처치실습) ▷ 교통체험 : 1시간 ▷ 자유관람 : 시간제한 없음 (※ 우리는 안전어린이, 나도소방관 등)	▷ 재난체험 : 2시간 ▷ 전문체험 : 1~3시간 (※ 소방시설실습, 응급처치실습) ▷ 어린이 : 1시간 ▷ 자유관람 : 시간제한 없음 (※ 소방역사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장)
체험관 이용방법	사전 예약(인터넷 또는 전화) + 자유관람	사전 예약(인터넷 또는 전화) + 자유관람

■ 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

가. 시민안전체험관 기능세분화(안 제2조)

- 안 제2조는, 현행 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인 ‘방재교육’을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그 기능을 ‘재난안전교육’과 ‘생활안전교육’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 이는 과거 재난체험 등 방재교육에만 집중되던 체험시설 및 교육이 교통안전, 소방시설, 어린이안전체험, 가정생활안전 등으로 세분화되거나 추가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표 2] 생활안전콘텐츠

① 교통안전체험 :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인식 등	
 <p>교통안전(전기소방차)</p>	 <p>교통안전(횡단보도, 신호등)</p>
② 가정 생활안전교육 : 승강기, 손끼임방지 등	
 <p>승강기 시뮬레이터</p>	 <p>아이도어(끼임방지 안전문)</p>
③ 계층별 생활안전교육 : 어르신, 어린이, 새내기 부모 대상	
 <p>어르신 가정안전체크리스트</p>	 <p>새내기 부모 생활응급</p>

나. 공휴일 지정 변경(안 제3조제2항제1호)

- 안 제3조제2항제1호는, 기존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1월 1일·2일’을 ‘1월1일, 설날, 추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²⁾가 1999.1.1일부로 개정되어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03년 동 조례 제정 시 단순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표 3]에서와 같이 명절 전·후의 이용객 실적을 살펴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의 최근 3년간(2013~2015년) 1일평균 방문객수가 광나루(507명)와 보라매(485명)를 합하여 총 992명으로, 이에 비해 설날과 추석은 각각 222명과 122명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이용객 실적이 저조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체험관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시민불편이 그리 클 것으로 예상되진 않으며, 오히려 비용절감에 따른 운영 효율성과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2016.3.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도 과학관시설에 대한 공휴일을 본 개정안과 동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 11. (생략)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표 3] 최근 3년간 체험관별 명절 및 일일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1일평균	설날	추석	1일평균	설날	추석
2013	489	244	47	477	101	120
2014	535	49	월요일 휴관일	504	49	월요일 휴관일
2015	497	103	91	475	122	109
합계	1,521	396	138	1456	272	229
평균	507	132	46	485	90	76

다. 체험관 무료이용 근거규정 설치(안 제5조제5항)

- 안 제5조제5항은,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에 있어 현행 이용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상에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과거 2003.3월 개관 당시에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경우, 어린이 및 노인을 제외한 성인과 청소년에게 이용료가 징수되었던 적이 있었음([표 4] 참조).

[표 4] 개관당시 체험관 이용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 2003.4.1)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체(10인이상)	
어 른	700원	550원	○ 19세 ~ 64세
청소년 및 군경	300원	250원	○ 청소년 : 13세 ~ 18세 ○ 군경(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의무소방원,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및 노인	무 료	무 료	○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 당시 상황을 보면, 전체 이용자 중 77.9%가 어린이나 노인 등 무료이용자에 편중되었고, 유료이용자인 청소년이나 성인은 불과 17.9%에 불과하였으며,
- 이에 서울시는 2007.10.1일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동 이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이 체험관 이용료 무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현 시점에서 신설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의 당위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